



(“IDEA”)을 위반하여, 법률 상 요구되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감시, 조사, 관련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는 바이다.

### 문서 요청

본 소송의 일부로서, 그리고 그들의 청구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측이 하기 상의된 보호명령에 따른 대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즉, 이는 아동의 개인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 및 네트워크 내에 저장된 정보이며, 이 대상에는 장애아동 및 특수교육 대상자격 측정을 요청했거나 이의 측정을 받았던 아동,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어느 때든 캘리포니아 학교에 등록하고 있거나 등록했었던 아동들이 포함된다.

CDE의 데이터 베이스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정보의 예로는, 이름, 소셜번호, 자택주소, 인구통계, 교과과정 정보, 주정부 테스트 결과, 교사 인구통계, 프로그램 정보, 행동 및 징계 정보, 성적향상 보고서, 특수교육 측정 계획, 특수교육 측정/평가,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건강, 정신건강 및 의료정보에 관련된 기록, 학생 주전체 식별시스템 (SSID), 출석통계,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정보, 그리고 주정부 테스트 결과들을 들 수 있다.

### 학생의 기밀보장 적격

가족교육권한 및 개인기밀보장법안 (“FERPA”), 20 U.S.C. § 1232g(b) 및 34 C.F.R. §99.31(a)(9)(ii), 그리고 장애자 교육법안 (“IDEA”), 20 U.S.C. §§ 1400 및 일련의 법은, 학생기록의 사적기밀을 보호하는 연방법이다. 이러한 법률은 이러한 기록의 공개가 법정명령을 준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법정 명령

2014년 5월 5일, 법정은 일체의 당사자들이 해당 소송 과정에서 획득된 기밀정보를 당사자 및 그들의 변호사, 상담자 및 법정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 비 공개하도록 명령을 발행하였으며, 이에는 학생기록이 포함된다. 일체의 정보는 본 소송 외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은 소송 종료 시 기밀 기록을 반환 혹은 소멸하도록 요구된다. 학생 신원 기록은 일체 공공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 동의 및 반대제기의 기회

상기 설명된 정보 공개에 의의가 없으면, 아무 조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개인 기밀 정보 및 기록의 공개에 반대하면, 본 법정에 2016년 4월 1일까지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알려 주셔야만 합니다.

첫째, CDE의 웹사이트 [www.cde.ca.gov/morganhillcase](http://www.cde.ca.gov/morganhillcase)에 들어가셔서 “학생정보 및 기록-사건 번호 2:11-CV-03471- 공개에 대한 반대 제기” 양식을 프린트하시어 완성하신 후, 아래 주소의 법원으로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이 대변하는 학생의 성명, 본인의 성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생년월일, 카운티, 학교 구청, 학교, 그리고 원하시면, 귀하의 반대 근거가 포함된 기밀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십시오.

2. 편지를 쓰시는 경우, 귀하의 편지 제 1면에 밑줄친 제목을 크게 다음과 같이 표시하십시오: “TO BE FILED UNDER SEAL [봉인된 서류]” 그리고 “OBJECTION TO DISCLOSURE OF STUDENT INFORMATION AND RECORDS [학생 정보 및 기록 공개에의 반대 제기], CASE NO. 2:11-CV-03471.”

3. 귀하의 편지나 반대 제기양식을 아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The Honorable Kimberly J. Mueller

c/o Clerk of the Court

U. 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California

501 I Street, Room 4-200

Sacramento, CA 95814

Attn: DOCUMENT FILED UNDER SEAL

귀하께서 부모 혹은 가디언이신 경우, 영향을 받는 아동이나 학생과의 관계를 반대제기 양식에 진술하셔야만 합니다.

법원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반대제기는 법원에 서면 상으로만 전달되어야 합니다.

2016년 4월 1일까지 반대제기 양식이나 편지를 법정에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귀하 자신이나 귀하의 자녀의 개인 기밀정보 및 기록에 대한 공개 반대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일체의 반대제기는 법정에 의하여 봉인된 상태로 보존되며, 즉 공공에 공개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봉인된 서류

학생 정보 및 기록 공개에의 반대 제기

하기에 서명한 본인은 부모/가디언 혹은 18 세 이상의 성인 학생으로서, *Morgan Hill Concerned Parents Association*, 일원 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USDC-California* 동부 지구 연방법원, 사건 번호. 2:11-cv-03471-KJM-AC 로 표기된 법률 소송 상,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의한 본인의/본인 자녀의 학생 기록에 실린 개인기밀 정보의 공개에 반대합니다:

부모/가디언 성명: \_\_\_\_\_

학생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카운티: \_\_\_\_\_

학교 구청: \_\_\_\_\_

학교: \_\_\_\_\_

의견 (원하시는 경우)

\_\_\_\_\_  
\_\_\_\_\_  
\_\_\_\_\_

\_\_\_\_\_  
부모/가디언 혹은 성인  
학생/예전 학생의 서명

날짜: \_\_\_\_\_

**본 양식은 (혹은 본 양식에 실린 정보)은 정규 우편으로 우송되어야 합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Judge Kimberly J. Mueller  
c/o Clerk of the Court  
Robert T. Matsui United States Courthouse  
501 I Street, Room 4-200  
Sacramento, CA 95814  
Attn: Document Filed Under Seal

**본 반대제기 양식은 2016 년 4 월 1 일까지 법원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